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5. 2. 13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☒] 기타				
건축주	배현석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		
	지번	75-80	관련지번	75-267, 75-81	
	대지면적	337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85.37 m ²	건폐율	55.01 %	층수 지하 : 지하1층/ 지상7층
	주용도:	숙박시설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	1 동
	최고높이	22.15 m	용적률	286.39 %	연면적 합계 998.91 m 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 조)분야	○ 건축선 위반 등 제반 여건 적합하게 반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○ 대지경계선 준수하여 건축계획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.(도로 침범) ○ G24B 거더 상세를 시공 시 문제가 없도록 자세하게 상세 작성 바랍니다. ○ 사전검토의견 항목7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.(슬래브 지지조건 반영할 것) ○ 사전의견 안건4에 대하여 가설배수로 계획 및 그라우팅 시 흠막이 벽체 배면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평가하고, 굴착 단면도 및 계측기 설치 단면도에 지장물 표기 바랍니다. ○ 사전의견 안건8에 대하여 경사버팀보를 고려하여 띠장의 압축응력과 합성 응력 검토 바랍니다. ○ 사전의견 안건10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공 시 헛갈리지 않도록 명확히 기술 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의견 안건11, 12에 대하여 계측기 관련 내용 보완 바랍니다. ○ 사전의견 안건14에 대하여 지내력기초 안전성 검토 누락(락앤락 공법 적용 근거 필요) 되었으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. ○ 건축선을 넘어가는 CIP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가 하시기 바랍니다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☒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5. 2. 13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☒] 기타				
건축주	정병용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		
	지번	200-4	관련지번 200-5,16,17,18,20,21,22,		
	대지면적	1,874.7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489.2 m²	건폐율	79.44 %	층수 지하 : 지하4층/ 지상11층
	주용도: 업무시설(오피스텔)	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	1동
	최고높이	38 m	용적률	699.34 %	연면적 합계 18,018.41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 조)분야	○ 제반 조건을 충족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하여 설계도서 제출 바랍니다. ○ 영구배수시스템을 공사 후에도 운영 시에는 주변 시설물에 대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 시 보완 바랍니다. ○ 사전검토의견 조치사항 반영하여 시행 바랍니다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☒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-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-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-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-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5. 2. 13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√] 기타				
건축주	이복식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		
	지번	608-7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,122.4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시가지경관지구(중심)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784.01㎡	건폐율	69.85 %	층수 지하 : 지하2층/ 지상16층
	주용도:	업무시설(오피스텔)	구조:	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54 m	용적률	665.93 %	연면적 합계 10,414.28 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해 체)분야	○ 심의의견 반영하여 설계자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의견 안건 1에 대하여 경사버팀보에 대해 띠장에 발생하는 측력에 대한 압축응력과 합성응력 추가 검토 바랍니다. ○ 지반보강공법 적용 근거를 보고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조치계획서의 조치내용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 ○ 제반 조건을 충족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